

인권교육의 방법

- 내용 구성과 모더레이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이 주 영*

1.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인권보호활동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볼 수 있다.

① **Oppositional work(반대활동)** :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활동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이라는 3단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

② **Promotional work(증진활동)** :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전반을 말하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관련 기구의 신설 및 강화, 인권에 관한 각종 홍보활동, 인권교육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과거 대부분의 인권보호활동이 반대활동에 집중되었다면, 90년대 이후에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인권교육과 같은 증진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후처방보다는 사전예방의 필요성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시설에서는 잔인한 고문이 무수히 자행되었다. 대표적인 고문방법으로 고문피해자의 허벅지에 총을 쏘고 상처 주변을 불펜으로 콕콕 찌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피해자의 피부는 괴사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극심한 고통을 준다. 고문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지 총 한 자루와 불펜 한 자루로 효과적인 고문을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운 좋게 생존한다하더라도 상처는 물론 이때 받은 트라우마의 치유는 쉽지 않다.

* 한국인권행동 상임활동가

즉, 일단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는 인권침해에 들어간 시간, 재정, 인력의 몇 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물론 새로운 인권침해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인권침해 주체의 변화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의 인권침해 주체는 주로 국가권력이나 소수 권력집단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민주화되고, 국제기구의 역할 분야가 강화되고 또한 인터넷 등의 발달로 세계가 점차 좁아짐에 따라, 비국가 주체 (non-state actor) 즉, 개인이나 공동체 혹은 기업 등이 새로운 주요 인권침해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종교적 관습에서 비롯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은 사회구성원 다수 혹은 그 공동체 자체가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된다.

일례로 최근 터키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의 히잡 착용 허용 문제를 들 수 있다. 머리스카프 형태의 히잡은 터키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인데, 터키정부는 지난 1982년 공공기관에서의 히잡 착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가 최근 들어 이를 다시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그동안 대학캠퍼스 등 공공기관에서 히잡을 착용할 수 없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어 왔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히잡을 전면 허용할 경우 점차 터키의 모든 여성이 히잡 착용을 강요받게 되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입장이 당장의 결론은 다르지만 현실 인식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히잡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터키 사회의 종교적·관습적 고정관념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제대로 집행한다 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근래에 들어 한국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악플은 물론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이와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랜 관습이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되거나 사회구성원 다수 혹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위의 처벌과 함께 그 사회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이 필요하다.

- 인권보장의 현실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인권문화의 창출

중요한 것은 인권에 관한 일상의 태도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일상의 노력이다. 특히 차별의 경우 국가 정책에 비해 일부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오히려 뒤쳐져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회구성원 하나하나가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체득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 기법과 태도를 체득하여 일상의 인권문화가 확산된다면 인권보호를 위해 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이 인권교육이다.

2. 일상의 인권문화 창출을 위한 인권교육

유엔은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권교육이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한 존엄성의 완전한 개발, 모든 국가·민족·원주민 간의 그리고 인종·국가·민족·종교·언어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별 평등과 그리고 우호의 증진, 자유로운 사회에 모든 인간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과 같은 방향의 태도를 만들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알리는 것을 통해 보편적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보급·확산하는 교육적 노력이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단순히 지식전달이 아니라 한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태도, 신념을 형성하는 것 즉, 인권감수성을 양성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차원의 학습기법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실천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실천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인권감수성의 체득이다.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개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 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인권감수성은 인권교육의 내용임과 동시에 인권교육의 목표가 된다.

특히 리스터(Lister)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이 단순히 인권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① 인권에 대한(about) 교육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인권의 역사, 인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적 문건들, 인권관련정책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와 권리침해에 대해 이해하며, 이와 관련한 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

② 인권을 위한(for) 교육 - 기술, 능력

실제로 인권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뿐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어떤 문제 상황이나 갈등상황 등을 만났을 때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고 바라보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사고능력을 어떻게 하고, 인권단체와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기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③ 인권을 통한(of) 교육 - 환경, 가치

인권은 인권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인권을 누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는 인권교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할 때,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에서 자유로움을 보장받아야 하며, 참여과정에서도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와 삶의 방식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인권교육은 과정 그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 체득이 된다.

3.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교육

2007년 봄 미국의 공립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새로운 매뉴얼¹⁾이 발간되었는데, 내용은 다음

과 같다;

<p>Part1. Know Your Human Righ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Rights: The Basics - A human Rights to Education in U.S. Public Schools - Holding Governments Accountable to Human Rights - Exercise: "CADRE Standards of dignity and Respect for Parents"
<p>Part 2. Using Human Rights for Social Chan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roduction to Strategies for Change - Human Rights as a Tool for Social Change - Putting it All Together
<p>Part 3. Taking Action by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ussion About Organizational Vision and Goals - Goals of Human rights Documentation - Starting a Documentation Project - Conduction and Analyzing Interviews - Strategy for Your Organization.

위의 목차만 살펴보더라도, 인권교육의 커리큘럼이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 먼저 1부에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권의 출현 배경, 인권의 기본정신과 원칙, 인권을 명시하고 있는 문서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학생인 점을 감안해서 교육권을 따로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제 권리와 관련 정부의 책임내용까지를 다루고 있다.

- 그리고 2부와 3부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인권을 위한 교육’을 다루고 있다. 현실 특히 교육 참가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인권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활동 등을 교실 내 학습과 실제 현장 활동까지를 결합시켜 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1) "Bringing A Human Rights Vision to Public Schools: A Training Manual for organizers" 2007년 봄 NESRI(National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itiative)와 CADRE(Community Assel Development Re-defining Education) 공동 발간.

즉, 이 매뉴얼이 제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에 관한 기초 이해 → 일상에서 인권문제와 원인 찾아내기 → 해결방법 모색하기 → 해결을 위해 행동하기 →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권리’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향유해야 할 기본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을 단지 법률적 제 권리로만 이해할 경우 자칫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조 더 나아가 개인의 이권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권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대부분이 인권 지식의 전달에 치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매뉴얼은 전체 커리큘럼의 상당부분을 교육 참가자들이 실제 현실을 분석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인권보호를 위한 방법과 판단능력 그리고 기술의 양성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인권교육의 출발선에서 이미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

‘일상에서 인권문제와 원인 찾아내기 → 해결방법 모색하기 → 해결을 위해 행동하기’는 교육 참가자들이 실제 자신이 속한 공동체(학교, 직장, 가정 등)에는 어떠한 인권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접 실천하는 내용이다. 만약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경우, 고쳐야 할 학교 안 인권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학교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교육의 준비주체가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도외시한다면 아무리 다양하고 화려한 교육기법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되기 어렵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반드시 체계화된 일련의 커리큘럼을 통해서만 인권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결국 모든 공동체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친화적 자세와 행동이 모든 개인의 익숙한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더라도 생활 속 인권침해적 습관은 줄여나가고 인권친화적 습관을 만들기 위한 일상의 캠페인은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관련 규범들을 어렵게 배우지 않더라도 오히려 인권교육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4. 인권친화적 교육 환경 - 인권을 통한 교육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진행자나 일부 참가자가 고압적이거나 일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참가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 현장은 더 이상 인권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현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인권교육은 결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 강요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참여 당사자는 자신의 의견과 느낌, 생각, 경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참가자 안에서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이견이나 갈등이 있음을 두려워 말고 그것을 어떻게 모두의 인권을 지키며 해결할 것인지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교육 장소나 자재, 기법 등을 정할 때 모든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교육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하는 참가자가 있을 때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프로그램 진행 중 참가자의 태도가 인권과 부합하지 않을 때 이를 어떻게 공유할지, 그리고 호칭 등 일상적 습관의 변화를 어떻게 현장에 반영할지 등등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세심한 고민과 배려에서 만들어지는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은 그 어떠한 강의나 교육보다도 더욱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인권교육에 있어서는 일방적 교육자와 일방적 피교육자가 있을 수 없다. 인권교육의 성공 여부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느냐가 50%, 나머지 50%는 참가자들의 참여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 참가자의 참여 보장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인권감수성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에 있어서 참여의 독려와 참여의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만 제대로 보장이 된다면, 아무리 무거운 주제라 하더라도 굳이 인권게임의 형식을 빌지 않고도 참가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음은 국제앰네스티가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기초 원리이다. 이것은 인권게임이든 토론이든 하물며 강의를 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기초 원리에만 충실하다면 어떠한 교육기법도 참가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국제앰네스티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기초원리 >

- ① 경험적 : 학습의 목적이 학습자들의 객관적인 조건과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 ② 활동 중심적 :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이 이후 토론 등의 활동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활동은 학습자가 가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에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표현할 활동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문제제기적 :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일관성과 부조리를 끌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를 자극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사고과정을 보다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수준으로 재정립하도록 돕는다.
- ④ 참여적 : 개념을 명료화하고, 주제를 분석하고, 활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집단적인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 ⑤ 변증법적 : 단지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이끌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자료, 통계 등과 같은 새로운 자료에서 나온 지식을 비교하도록 하여, 새로운 결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⑥ 분석적 : 학습자의 응답에서 나온 주제와 그 주제들과 연관된 기초원리는 학습자 자신들에 의해 제기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교육의 기법

참가자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강의 중심의 교육방식을 줄이고 참여토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토론도 다양한 참여기법을 도입하여 변형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기법들은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감정이입과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지, 어떻게 자신들이 단순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존엄성, 평등과 같은 개념들을 사람, 힘, 책임 등과 관련된 자신들의 일상 경험 속에 통합할 수 있게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기법은 특히 인권교육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이는 비판적 사고, 인지적 정서적 학습, 경험 및 견해의 차이 존중, 학습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 참여 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 브레인스토밍 : 단순 아이디어의 취합 → 분류 → 통합, 수정, 삭제 → 재논의 → 결정
- 사례 연구 : 역사적 사실, 실제 사례, 가상 사례
- 창의적 표현 : 이야기, 시, 그래픽 미술, 조각, 연극, 노래, 무용 등의 기법
- 토론 : 공식적 토론, 패널, ‘토킹 써클(말하는 원)’, ‘돌아가며 말하기’, ‘디스커션 웹(토론 거미줄)’ 등
- 현장견학/ 지역사회 방문
- 인터뷰 : 인터뷰 대상자는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활동가, 지도자 또는 인권관련 사건의 목격자 등
- 연구 프로젝트 : 도서관이나 인터넷 시설을 이용하는 공식적인 연구도 가능하며, 인터뷰 여론조사 미디어 관찰 기타 자료 수집 기법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연구도 가능
- 역할극/시뮬레이션 : (해설자와 주요 인물로 구성된) 이야기의 형태를 띠거나, (진행자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즉석 대화를 구성하여 인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극의 형태를 띠 수 있음. 변형된 형태로 모의재판, 가상 인터뷰, 시뮬레이션 게임, 청문회, 심판 등
- 시각 자료 : 칠판, OHP, 포스터, 전시물, 플립 차트,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 등. 시각 자료는 남용될 소지가 있는데, 참여 토론이나 참가자들의 직접 참여가 시각 자료로 대체되어서는 안 됨.
- 인권게임

5. ‘선생님’보다는 ‘진행자’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진행자의 역할이다.

일례로, ‘강의’란 교육기법이 인권교육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초입부에 인권의 개념을 강의 형식으로 배치하게 되면 참가자 인식의 공동출발선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이후 이어지는 다양한 토론이나 참여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인권교육에 있어서 ‘강의’는 하나의 주장으로 소개되어 강의 내용과 관련 교육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이견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태도 못지않게 전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인권감수성을 가진 교육진행자는 향후 인권교육의 확대와 발전에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가 발간한 ‘인권교육활동가 양성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에 소개된 ‘모더레이터의 역할과 자세’²⁾이다.

1) 모더레이터의 역할과 자세

① 모더레이터(Moderator, 교육진행자)는 참석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 혹은 촉진자(Facilitator)라고 할 수 있다.

- 모더레이터는 회의의 좌장이나, 조직의 수장 혹은 지도자나 영도자가 아니다. 즉, 모더레이터는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제와 교육목적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 모더레이터는 학습도우미로 기능하며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의사표명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다.

② 모더레이터는 ‘내용전문가’이기보다는 ‘교육진행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교육과 관련된 제반요건, 즉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과 교육기자재, 교육진행 시간과 그에 따른 학습자 심리 변화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합하여야 원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 모더레이터는 처음 교육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좌석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사용되는 교수방법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는지를 알고 이를 위하여 교육기자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 모더레이터가 마치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강사의 역할을 뺏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더레이터는 교수와 학습의 방법을 책임진 사람이고, 강사는 그 내용을 책임진 사람이다. 모더레이터는 학습방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서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이면 내용의 전문성과 학습방법의 전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인권전문가의 교육기법학습, 교육기법전문가의 인권학습)

2) 인권교육활동가 양성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2006년 발간) ‘참고자료-소통을 위한 교육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장 저’중에서. 필자의 판단에 따라 ‘학습자’를 ‘교육 참가자’ 혹은 ‘참가자’로 임의 변경함.

③ 인권교육에서 모더레이터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대상에게 강요하고 주입시키려 하기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가 ‘인식을 전환’하여 인권 리더가 되도록 돕는 ‘학습도우미’이며 ‘인권 감수성 촉진자’라고 할 수 있다.

2) 모더레이터의 자세

- 자세 1 : 교육생을 신뢰해야 한다.
 - 그들은 또 다른 강사이고 선생님이다.
 - 모더레이터는 교육 참가자들의 경험을 엮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모더레이터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자신의 지식 돌담에 하나 새로운 돌을 쌓으며 자신을 자랑하고, 전문가와 동료들과 의견을 비교하여 동일성을 확인하고 차이를 인식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참가자들은 인권보호·향상을 위해 변화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변화를 추진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모더레이터는 가해자대 피해자 대립구도의 관점보다는 교육생 스스로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인식하여 직무 및 일상생활의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인권리더양성 관점이 필요하다.
- 자세 2 : 참석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학습과정을 검토하고 참가자 지향적이어야 함.
 - 참가자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진행자는 교육 참가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의 언어능력과 그들의 도덕적 신념 및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모더레이터는 참가자의 신념과 가치를 먼저 알고 이에 맞게 접근법이나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교육진행자들이 무의식중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참가자들의 능력을 벗어나면 이들에게 도움을 전혀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참가자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문제점들을 갖고 참석하며, 교육 장소까지의 이동과정에서 육체적 피로를 느끼게 되므로 참석자들이 피로를 풀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나서 학습과정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휴식시간이 짧거나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운영할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 자세 3 : 단기간에 참가자들의 신념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

(목적과잉금지).

- 참가자들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는 충격요법보다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하루 이틀의 단기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써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오랜 교육, 사회 환경의 영향 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내재화해 온 가치관을 변경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지 가치관 변경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 자세 4 : 교육기법에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테크닉과잉금지).
-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용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이란 인권감수성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교육방법의 광범위한 이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서로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는 수단 차원에서만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가자에게 감동과 깨우침은 진실이 묻어나는 한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 자세 5 : 자신의 의견, 개인적 목표·가치 등을 주장하는 태도 대신에 참가자들에게 더 많이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모더레이터는 어떠한 주장과 의견이든 강요하거나 주입시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그는 참가자들이 내놓은 의견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지 않아야 한다.
 - . 만약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모더레이터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모더레이터로서의 자신과 또 토론참가자로서의 자신을 명확히 분리한다는 사실을 전체에게 밝히고 난 후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 교육의 주인은 참가자이다. 성인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말하도록 해야 한다. 성인 참가자의 경우 자신만의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인권교육은 정해진 정답 찾기가 아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또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의 연속이다.
- 모더레이터는 참가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더레이터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무언가에 답하는 기술이 아니라 보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술이다. 질문을 통해 그는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깨우고, 학습과 토론에 활력을 불어넣고 참가자들이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며 결국에는 주제로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
- 모더레이터는 질문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하나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구성원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넘어가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고, 그때그때의 분위기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자세 6 : 학습조직 전체나 혹은 참가자 개개인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표출하는 각종 표현이나 기호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 나아가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의 태도를 알아차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참석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마찰이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때 참석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더레이터는 가급적 교육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가자와 친밀해지기 위해 강의실에 미리 들어가야 한다. 먼저 가서 교육공간과 친숙해져야 하고, 미리 교육생들과 마음열기를 시작해야 한다. 얼음과 같이 서먹서먹하게 얼어붙어 있는 참가자들의 냉랭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어 주는 과정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 만약 참석자들이 모더레이터의 태도나 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항의를 할 때에는 자신을 변호하기 보다는 그들의 공격과 반발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 자세 7 : 교육에 즐거움을 도입하여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심각한 주제일수록 게임기법을 도입하여 즐겁게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알기측면에서도 지식정보 학습도 강의식이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할 수 있는 기법(편집회의, 따로 또 같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음악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음악의 선곡을 잘해야 한다. 익숙한 클래식이나 가요나 팝송이 효과적이다. 토론의 열기를 식히려면 느리고 부드러운 음악을, 반대로 사람을 흥분시키고 촉발시킬 때에는 빠른 음악을 사용한다. 음악을 사용하여 토론의 시간적 길이를 제시해도 좋다.

○ 자세 8 : 참가자의 수동적 태도를 극복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좌석배치를 바꿀 필요가 있다

- 학교의 교실과 같은 분위기를 없애기를 권한다. 그런 교실배치에서는 책상 앞에만 앉으면 독립적 사고를 멈추고 수동적인 자세가 되며 궁금한 것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의 교육현장이 많다. 좌석배치는 의사소통을 위한 모더레이터의 의지이다. 참석자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책상을 치우고 자신에게 쉽게 다가오도록 해야 한다. 참석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싶은 모더레이터는 참석자들이 자신을 향하게 앉히기 보다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시킨다.

6. 마치며

올 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보급과 제도화를 위해 인권교육법틀안을 마련하였다. 지금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다. 굳이 수단 다르푸르의 대규모 학살이나 난민문제, 명예살인 등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문제, 교육문제, 주거의 문제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근래에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은 무척 환영할 일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권교육의 관건은 교육 기획과 진행의 주체가 얼마만큼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모든 인권교육의 공간이 스스로를 변화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문을 여느냐 하는 것이다.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일상의 ‘캠페인’과 인권 ‘교육’이 결합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인권이 이권으로 흐르고 인권교육이 경쟁이나 입시의 수단이 된다면 우리사회는 또 한번 좌절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활동가 양성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